과학기술정보통신부

2026년 연구산업 유공자 장관표창 추진계획

1 추진 목적 및 방향

□ 추진 목적

○ 연구산업 육성과 발전에 공로가 큰 유공자를 분야별로 발굴·포상함으로써 연구산업 활성화 및 관련자 사기 진작

□ 추진 방향

○ 포상 후보자를 각계각층에서 폭넓게 발굴하며, **특정단체나 분야에 치우치지 않도록** 대상자 선정

2 표창 규모 및 대상

□ 공적 분야

○ **연구산업 발전 유공(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)**

□ 표창 규모 : 총 23점

○ 개인 17점, 단체 6점

□ 표창 추천 대상

○ 연구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·산업육성·기술개발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

* 민간(산·학·연)·협단체 등 연구산업 종사자 대상(개인 또는 단체)

※ 기 지정된 우수 전문연구사업자 및 소속지원 우대 검토

※ 추천 시 유의사항 : 특별한 공적(성과)없이 단순히 오랜 기간 성실근무 등의 사유의 추천은 지양하고, 구체적이고 특별한 성과 도출 유공자 우선 추천

3 표창 기준 및 추천제한

□ 자격기준 및 추천제한 (표창 추천 마감일 기준)

구분	자격기준	추천제한
개인 **(공무원)**	▪ 실재직기간 3년 이상	▪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(근속표창 제외) ▪ 정부포상(모범공무원 포함)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▪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※ 경징계(견책·감봉)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천가능 (단, 「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」 제4조제2항(제1~6호)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(주요비위)에 해당하면 추천불가) ▪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자 ▪ 기포상공적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▪ 공·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
개인 **(일반국민)**	▪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(실근무기간만 적용)	▪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▪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언론보도 등 논란이 있어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▪ 산업재해, 공정거래, 임금체불 관련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▪ 부실학회 참석, 연구비 부당사용, 부정적 연구세습 등 연구부정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가 예정된 자 ▪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, 장관표창 업무지침 등에 따라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
단체 **(대외기관, 단체)**	▪ 해당분야 2년 이상 활동 지속 ▪ 국가와 사회발전, 공익제고 등 공이 큰 기관(단체)	▪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동일 분야에 대해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(공적분야가 다르더라도 연 1회 이상 불가) ▪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언론보도 등 논란이 있어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
단체 **(관서)**	▪ 해당 분야 우수관서	

※ 타부처 공무원의 경우, 추천일 기준 실재직기간 3년 이상이고 추천 당시 소속된 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필요로 함

□ 공통 추천제한 사항

○ 표창권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**자격기준 준수**

○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은 추천 제외가 원칙

○ 표창은 **동일한 공적**에 대하여 **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음**

◇ **추천 부서 및 소속기관**에서는 표창추천 전에 엄밀히 조사하여 **부적격자(추천제한자)가 추천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**

◇ **공적내용**이 표창대상자로 **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표창대상에서 제외**되므로 **소속기관**에서는 **포상추천심의회(공적심의회)를 엄격하게 운영**하여 **적격자**를 **선정·추천**해야 함

□ 추천제한 상세 내용

○ 공무원 표창

- **(재표창금지) 표창추천 마감일**(이하 **'추천일'**) **기준,**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**수상일**로부터 **3년**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  ■ **추천일 기준,** 정부포상(모범공무원 포함) **수상일**로부터 **2년**이 경과하지 않은 자

  ※ 단, 근속표창을 수여하거나 근속표창 이후 다른 장관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재표창 금지기간 적용 제외

- **징계 또는 불문경고**(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) **처분**을 **받은 자**

  ■ 경징계(감봉·견책)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 중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추천이 가능함

  ■ 단, 「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」 제4조에 제2항의 각 호에 따라 감경 제한 비위를 저지른 경우는 경징계(불문경고)가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

「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」 제4조제2항(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)
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8조의2제1항
1의2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
2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3.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
4.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
5. 「도로교통법」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
6. 「공직자윤리법」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·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
7.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
7의2.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(소극행정은 제외한다)
8.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
9. 성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 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
10.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
11.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
12.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
13.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
14.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

- **징계의결 요구** 중이거나 **직위해제** 또는 **휴직** 중인 자

- **기포상공적과 유사**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

- 기타 **사회적 지탄**을 받거나 민원 등 **사회적 물의**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(도박, 불륜, 사기, 강·절도, 상해, 갑질 등)

  * 감사원, 검찰, 경찰 등 조사·수사개시, 기소, 민·형사재판 계류, 언론보도

○ **국민 및 단체 표창**

- **(재표창금지) 추천일 기준,**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**수상일로부터 2년**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  ※ 단체표창의 경우 기표창 수상분야와 동일분야에 대해 2년

- **단체표창**의 경우, 유공분야가 달라도 **연 1회**를 초과할 수 없음

- 공·사생활을 통하여 **사회의 지탄**을 받거나 민원 등 **사회적 물의**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(단체 포함)

- 부실학회 참석, 연구비 부당사용, 부정적 연구세습 등 **연구부정**으로 인하여 제재 중이거나 제재가 예정된 자

  ▪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(NTIS)에 **제재 중, 제재예정인 자, 제재종료 및 제재해지는 3회 이상**으로 등록된 경우 **추천 제외**

- 아래에 각 내용에 해당되는 자

표창 대상	확인내용	확인방법
법인(단체) 대표 임원	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의하여 **산업재해**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**공표된 사업장**과 **그 임원**	붙임1 제한사항 조회방법 참조
법인(단체) 대표 임원	**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**(단체 포함) 및 **그 임원**	
개인	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**임금체불**과 관련 명단 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**체불사업주**	

4 추천 제출서류 및 행정사항

□ 제출 서류

○ **장관표창 대상자 명단** [서식1]

○ **공적조서** 1부 (개인 : [서식2-1] / 단체 : [서식 2-2])

○ **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** [서식3]

○ (타기관 공무원) **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** 1부 [서식4]

○ (타기관 공무원) **추천서**

- 표창추천 공문서(기관장 직인 날인) 또는 임의양식의 추천서 등 소속 기관장의 표창추천사실 증명서류이어야 함

○ (일반국민 대상) **인사기록카드 사본** 1부

※ 선명하게 복사하여 반드시 인사담당관이 원본과 대조 후 추천기관장의 직인 날인(기록카드는 반드시 원본을 복사)

※ 인사기록카드가 없는 경우 이력서와 함께 이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

공적조서 작성 요령

○ 공적요지는 추천후보자의 **주된 공적내용을 개조식으로 쉽고 간명하게 작성**

- 공적요지는 육하원칙에 따라 **연구산업 발전 공적을 중점으로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례**를 기재하고 '~기여함'으로 종결

◆ 공적요지(예시)

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 □□공사의 시공책임자(담당자)로 근무하며 △△공법 등 신기술을 도입·적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(0억원)하고, 공기를 단축(0년)하여 적기준공에 기여함

○ 주요경력란의 기간과 과거 포상기록란의 포상일자의 연월일 표기를 정확히 기재

* **과거 포상기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**

○ 공적기간은 공적과 관련된 전체 기간을 합산하되 **제출마감일을 기준으로 작성** (7년 6개월인 경우 '07년 06월'로 기재)

○ **추천훈격란은 '장관표창'으로만 기재**하며 조사자는 추천부서장, 추천자는 기관장임

○ **서명 또는 관인을 포함하여** 이미지(스캔) 또는 PDF파일로 첨부

작성 시 유의사항

○ 포상대상자 추천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,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, 범죄조회 등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

○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님

○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허위기재 및 누락, 인사기록카드 사본 위조 및 변조 시에 해당기관이 책임을 짐

○ 추천기일을 엄수하여 제출하고, 기일경과로 추천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요청

○ 기타 장관표창 관련 세부기준은 '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업무지침'에 의함

□ 제출 방법

○ 제출기한 : 2026.8.28.(금)

○ 제출방법 : 전자문서 제출 원칙

- 다만, 전자문서가 불가능할 경우 공문형태로 우편으로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이메일로 송부

※ 원본서류를 스캔한 PDF파일과 작성 원본 **한글파일(.hwpx)** , **엑셀파일(.xlsx)** 전부 송부 (위 제출서류 중 '인사기록카드 사본(일반국민 대상자)' 외 작성 원본파일 해당)

○ 제출처 :

- 대학·출연연 :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(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70 NH서울타워 17층)

(문의 :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허익범 선임 02-6347-5446, hik128@compa.re.kr)

- 기업 : 한국연구산업협회(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, 3층)

(문의 : 한국연구산업협회 최영훈 선임 02-779-9688, choiyh@rndia.or.kr)

□ 표창 수여

○ 수여 예정일 : 2026.10.28.(수) ※「국제연구산업 컨벤션 2026」에서 수여 예정

○ 수여 장소 및 방법 : 대상자 확정 후 별도 통보

5 추진 일정(안)

○ 유공자 표창 대상자 추천 접수 : ‘26.8.3.~8.28.

○ 후보자 검토 및 자체 포상추천심의회 : ~‘26.9.11.

○ 과기정통부 공적심사 및 대상자 확정 : ‘26.9.17.

○ 표창 수여 : ‘26.10.28.

붙임1 제한사유 조회 방법

◆ **장관표창** 추천 제한사항 중 산업재해, 불공정행위 및 임금체불주 관련 제한사항에 대해 아래 **두 가지 방법 중 하나**를 선택하여 확인해야 함

※ 정부포상(훈장, 포장, 대통령·국무총리표창 이상)의 경우, 반드시 기관에 공문을 보내어 조회해야 함

① 각 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공문을 통하여 조회

- 산업재해 :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(☎ 044-202-8806)
- 불공정행위 :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(☎ 044 - 200 - 4131)
- 임금체불주 :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(☎ 044-202-7548)

② 아래의 방법(소관부처 홈페이지 게재 등)을 통하여 확인

1.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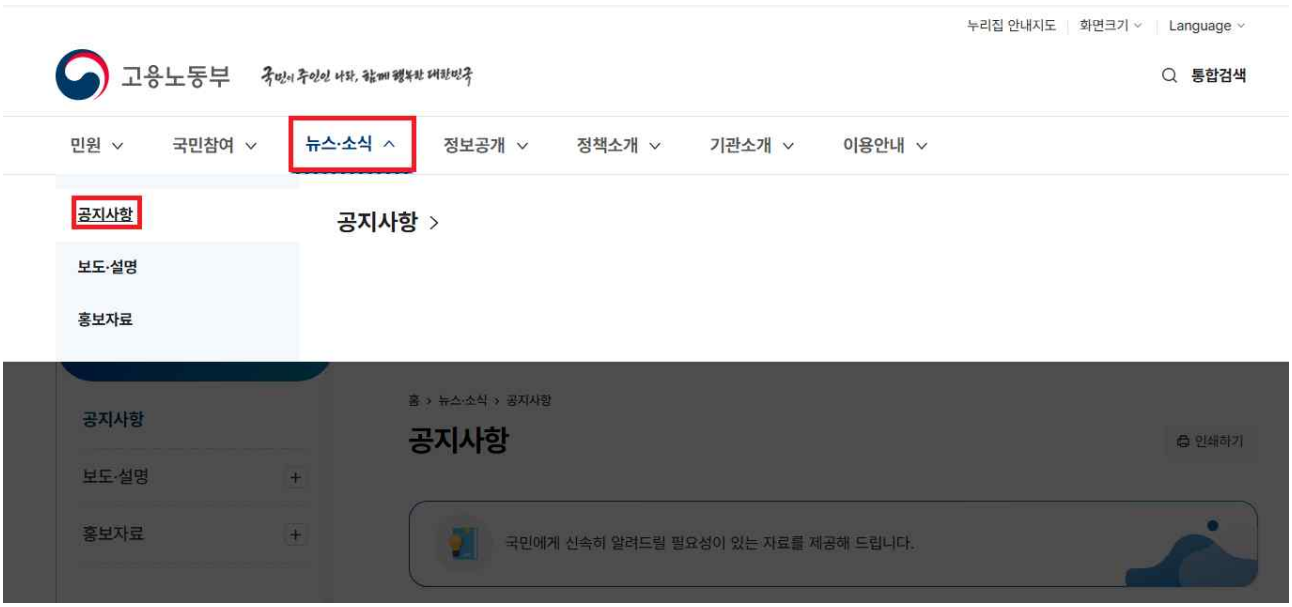
○ **최근 3년간** 위 법 제9조의2, 동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해 **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**

○ **최근 3년간** 위 법 제10조, 동 시행령 제10조 및 동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해 **명단이 공표된 사업장** 및 그 **임원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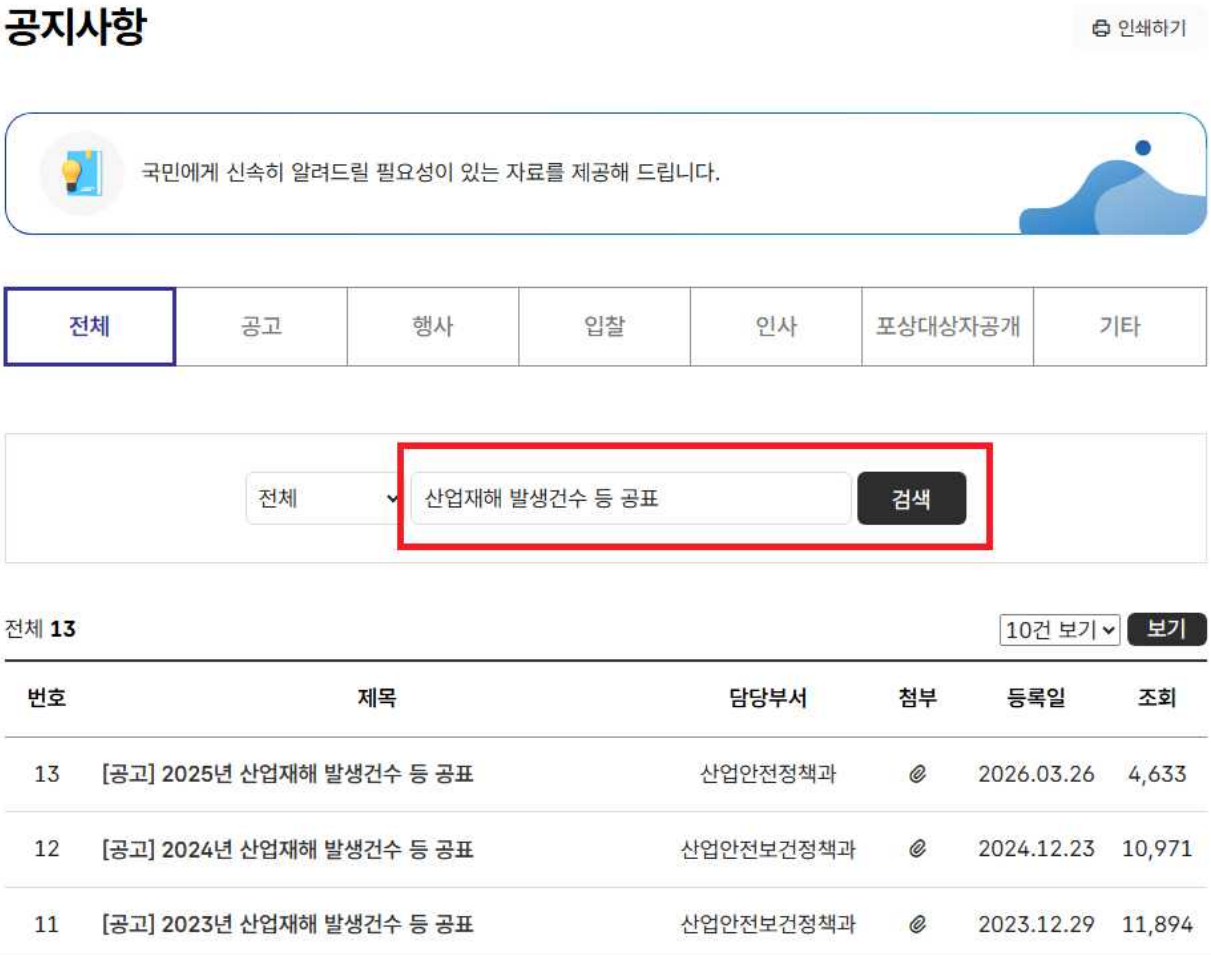
※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**뉴스·소식>공지사항>"산업재해" 검색**

(http://www.moel.go.kr/news/notice/noticeList.do)를 통하여 **최근 3년간**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목록 확인

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> 뉴스·소식 > 공지사항



② “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” 검색 및 최근 3년간 게시물 확인



○ ‘임원’이라 함은 이사, 대표이사, 감사, 공장장, 현장소장 등 사업장의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

※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(사외이사 제외)과,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

☞「사업자 등기부등본」,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」(http://dart.fss.or.kr, 회사별검색-사업장보고서-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)을 통해 확인

※ 감사(위원)는 등기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

※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,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

2.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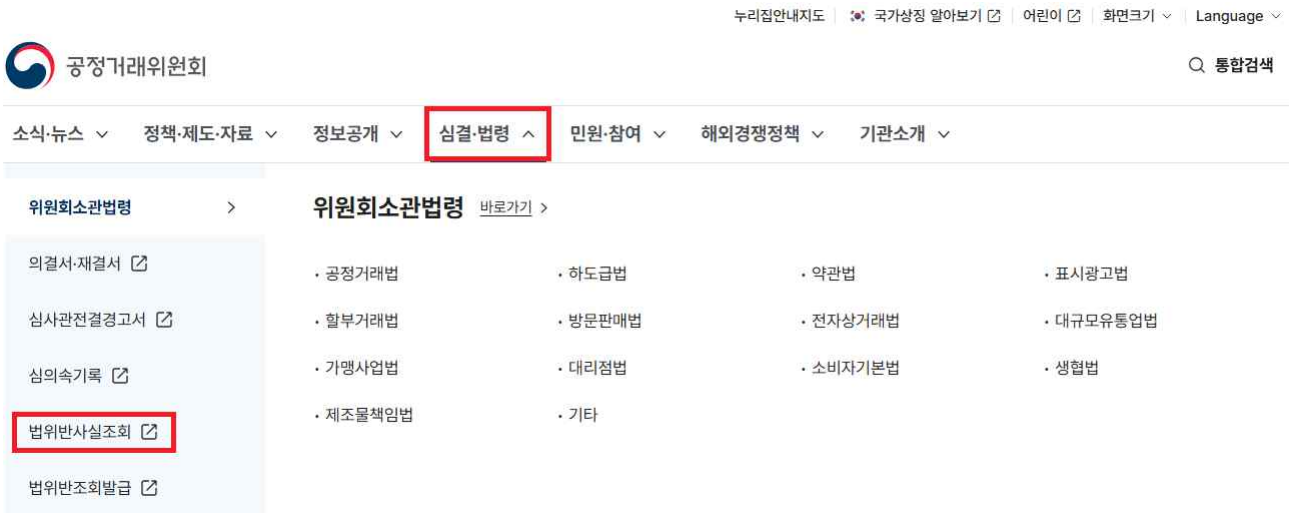
○ **최근 2년 이내 3회** 이상 **고발** 또는 **과징금** 처분*을 받은 **법인의 대표자**와 책임 있는 **임원은 추천을 제한**함

*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

○ **최근 1년 이내 3회** 이상 **시정명령** 처분을 받은 **법인** 및 그 **대표자**와 책임 있는 **임원은 추천을 제한**함

※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(**심결/법령 > 법위반사실 조회** : http://www.ftc.go.kr/www/violationLawList.do?key=298)를 통하여 확인

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> 심결/법령 > 법위반사실조회



② 법인명 등 검색하여 처분사항 확인(최근 3년간)



3.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

○ **최근 3년간 위 법** 제43조의2, 동 시행령 제23조의2의 **체불사업주**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

○ **최근 3년간** 위 법 제43조의3, 동 시행령 제23조의4의 **체불사업주**로서

과학기술정보통신부

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

※ 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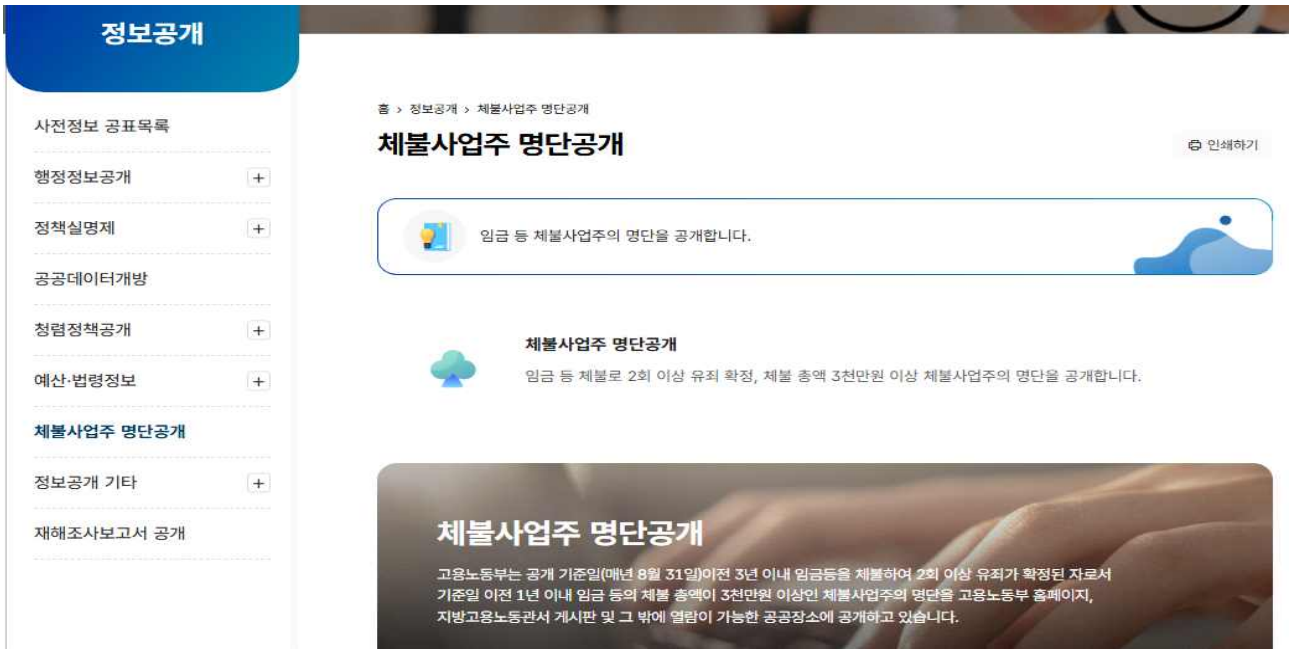
※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**정보공개 > 체불사업주 명단공개** :

http://www.moel.go.kr/info/defaulter/list.do)를 통하여 확인

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> 정보공개 > 체불사업주 명단공개



② 체불사업주 명단 조회



과학기술정보통신부

③ 공개명단에서 검색하여 확인(최근 3년간)

